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hapter 0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1

Chapter 02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5

Chapter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3~2017년) ...13

-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사례 건수 15
- 연도별 학대사례 건수 16
-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17
- 연도별 재학대 건수 18
- 연도별 신고자 유형 19
-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21
-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22
-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23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23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25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26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27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28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30
-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31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33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Silver
Smile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발간목적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음
- 지난 5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는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였음
-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31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와
 -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목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음

자료수집 과정

- 본 자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으로서 취약노인통합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임

자료분석

-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음.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내용

-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 류	내 용
연도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접수 현황 학대사례 건수 일반사례 건수 재학대 현황 신고자 유형 전체 상담횟수 학대발생장소 사례판정 현황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학대유형 건수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호노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소노인 및 입소하지 않고 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노인 모두를 의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일반상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및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적 치료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노인학대 신고

▶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상담 및 신고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로 당해 연도(2017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노인학대 사례

▶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일반사례

-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노인학대 유형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가구형태

▶ 노인단독가구

-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노인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손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치매건강상태

▶ 치매진단

-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 치매간이조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3~2017년)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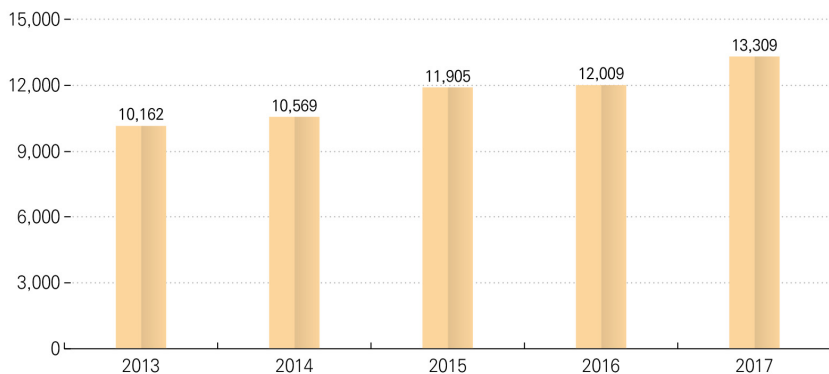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사례 건수

-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17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3,309건으로 2013년 대비 약 31% 증가(10,162건 → 13,309건)하였음

[표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사례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증감률	-	4.0	12.6	0.9	10.8



[그림 1] 연도별 전체 신고사례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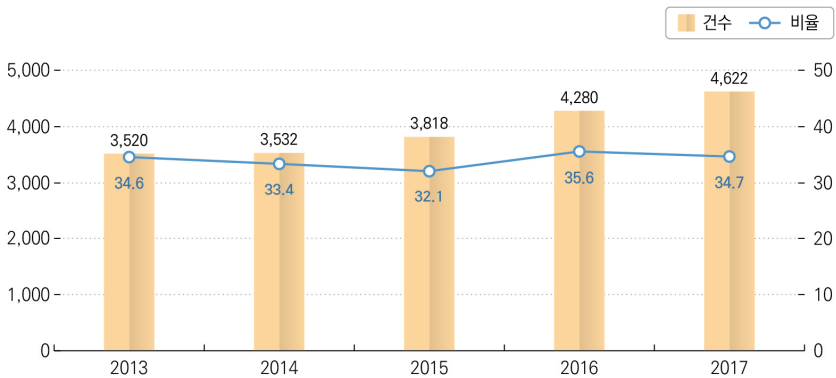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사례 건수

- 학대사례¹⁾의 경우 전체사례의 30~40% 수준이며 2013년 대비 약 31.3% 증가(3,520건→ 4,622건)하였음

[표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대사례	3,520	3,532	3,818	4,280	4,622
	34.6	33.4	32.1	35.6	34.7
증감률	-	0.3	8.1	12.1	8.0



[그림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1)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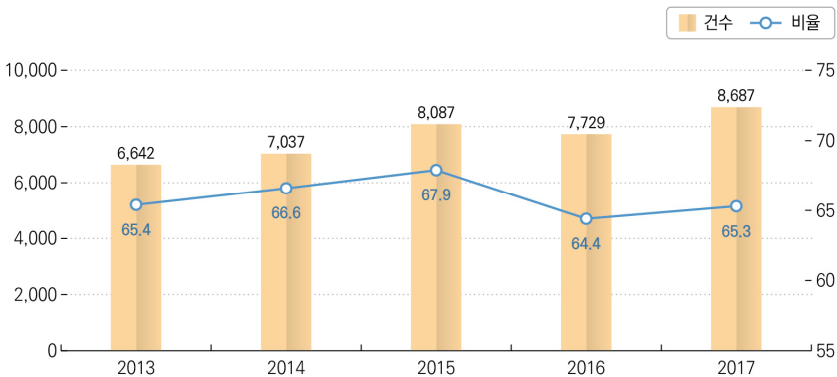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 일반사례²⁾는 전체사례의 60~70% 수준이며 2013년 대비 약 30.8% 증가 (6,642건→8,687건)하였음

[표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사례	6,642	7,037	8,087	7,729	8,687
	65.4	66.6	67.9	64.4	65.3
증감률	-	5.9	14.9	-4.4	12.4



[그림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2) 일반사례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된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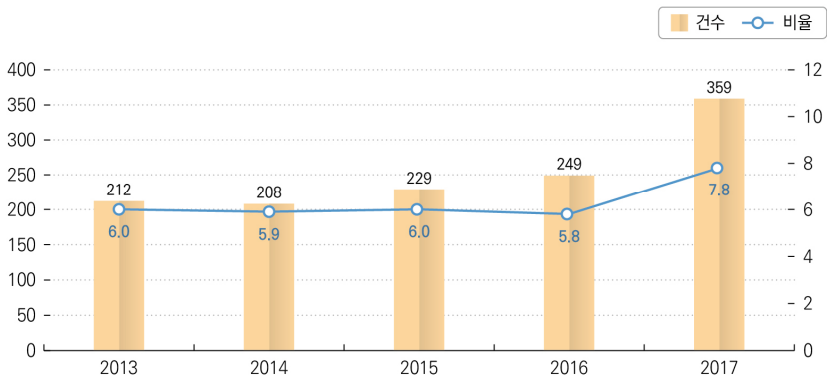
연도별 재학대 건수

-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013년 이후 2014년에만 감소하고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7.8%로 나타남

[표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대사례 건수		3,520	3,532	3,818	4,280	4,622
재학대	건수	212	208	229	249	359
	비율	6.0	5.9	6.0	5.8	7.8
증감률		-	-1.9	10.1	8.7	44.2



[그림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3년 대비 2017년 약 1.6% 감소(645건, 18.3% → 635건, 13.7%)함
- 2017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86.3%로, “타인”(755건, 16.3%)의 신고 비율이 2016년 대비 10.8%p(236건 → 755건) 대폭 증가한 반면, “학대피해노인 본인”(431건, 9.3%), “친족”(407건, 8.8%) 등의 신고 비율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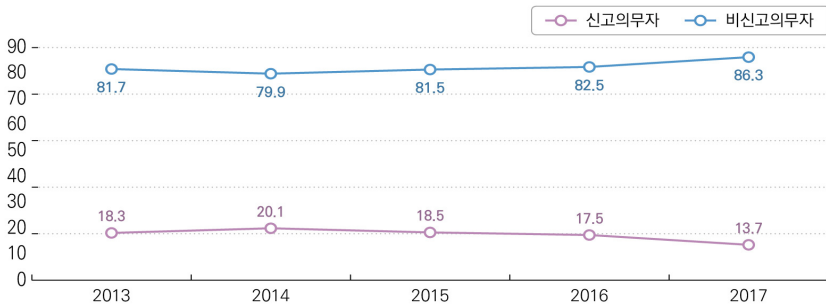
[표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3	42	44	27	20
		1.2	1.2	1.2	0.6	0.4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9
		-	-	-	-	0.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07	182	178	168	153
		5.9	5.2	4.7	3.9	3.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노인)관련 종사자	-	5	16	2	2
		-	0.1	0.4	0.0	0.0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66	85	101	79	105
		1.9	2.4	2.6	1.8	2.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63	322	290	382	283
		7.5	9.1	7.6	8.9	6.1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24	17	31	44	18
		0.7	0.5	0.8	1.0	0.4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	46	38	45	34
		1.0	1.3	1.0	1.1	0.7
비 신 고 의 무 자	구급대 대원	6	8	9	3	5
		0.2	0.2	0.2	0.1	0.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2	-	1	2
		-	0.1	-	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	-	-	4
		-	-	-	-	0.1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소계	645	709	707	751	635	
		18.3	20.1	18.5	17.5	13.7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본인	842	777	722	582	431	
		23.9	22.0	18.9	13.6	9.3	
	학대행위자본인	7	10	8	4	6	
		0.2	0.3	0.2	0.1	0.1	
	친족	592	519	567	500	407	
		16.8	14.7	14.9	11.7	8.8	
	타인	292	300	320	236	755	
		8.3	8.5	8.4	5.5	16.3	
	관련기관 ³⁾	1,142	1,217	1,494	2,207	2,388	
		32.4	34.5	39.1	51.6	51.7	
	소계	2,875	2,823	3,111	3,529	3,987	
		81.7	79.9	81.5	82.5	86.3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 “129 연계”의 경우 2008년부터 신고접수처로 분류됨



[그림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3)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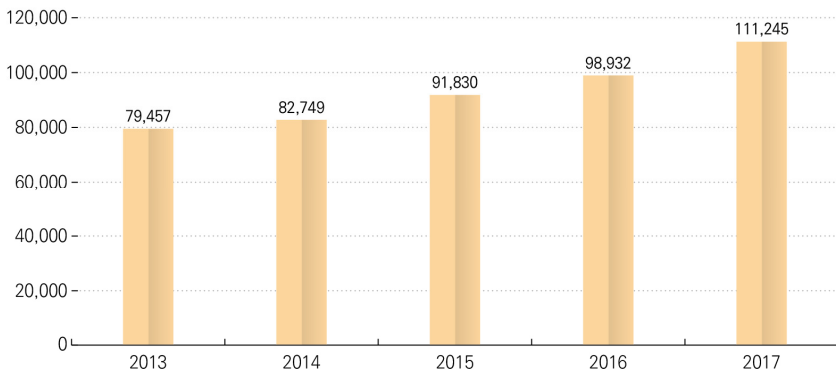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 전체 상담횟수는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을 합한 것으로 **학대상담**이란 신고 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일반상담**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노인학대와는 관련 없는 노인문제로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전체 상담횟수는 2013년 대비 **약 40.0% 증가**(79,457회 → 111,245회) 하였음

[표 6]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상담횟수	79,457	82,749	91,830	98,932	111,245
증감률	-	4.1	11.0	7.7	12.4



[그림 6]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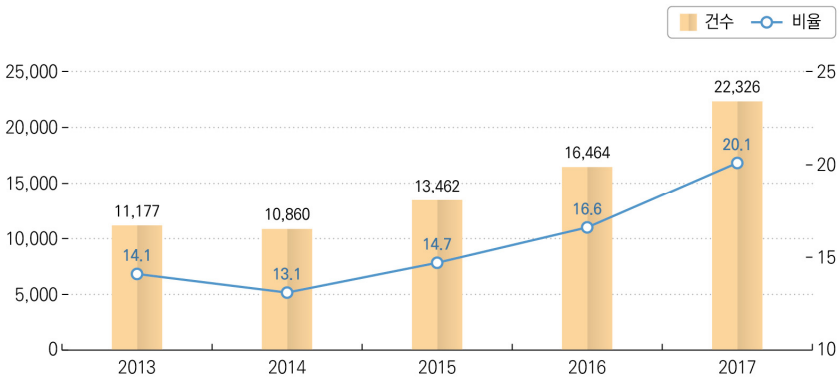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 일반상담의 경우 2013년 대비 약 6%p 증가(11,177회 → 22,326회) 하였으며, 전체 상담횟수의 20.1%의 비율을 보임

[표 7]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상담	11,177	10,860	13,462	16,464	22,326
	14.1	13.1	14.7	16.6	20.1
증감률	-	-2.8	24.0	22.3	35.6



[그림 7]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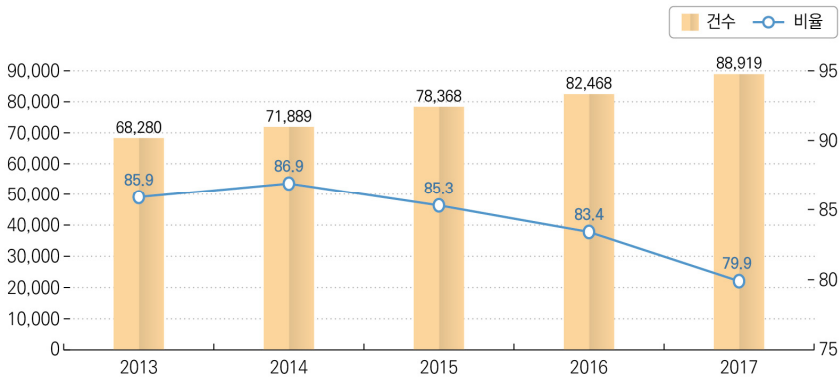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 학대상담의 경우 2013년 대비 약 30.2% 증가(68,280회 → 88,919회) 하였으며, 전체 상담횟수의 79.9%를 차지함

[표 8] 연도별 전체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대상담	68,280	71,889	78,368	82,468	88,919
	85.9	86.9	85.3	83.4	79.9
증감률	-	5.3	9.0	5.2	7.8



[그림 8]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17년 4,129건(8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8.7% 증가함(3,799건 → 4,129건)
-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17년 327건(7.1%)으로 전년 대비 37.4% 증가함(238건 → 327건)

[표 9]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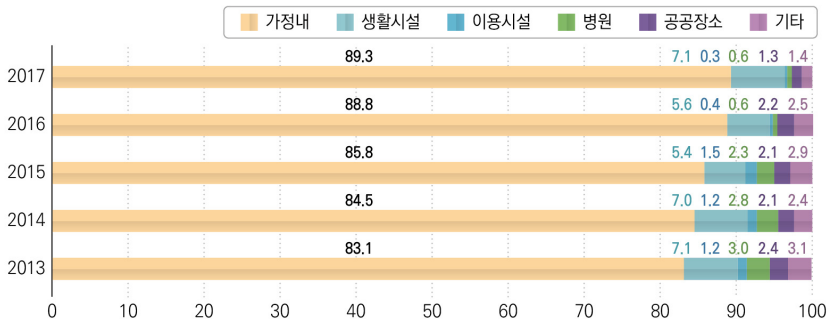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정내	2,925	2,983	3,276	3,799	4,129
	83.1	84.5	85.8	88.8	89.3
생활시설	251 ^{주1)}	246 ^{주2)}	206 ^{주3)}	238 ^{주3)}	327
	7.1	7.0	5.4	5.6	7.1
이용시설	42	44	57	16	16
	1.2	1.2	1.5	0.4	0.3
병원	107	100	88	24	27
	3.0	2.8	2.3	0.6	0.6
공공장소	86	74	80	94	58
	2.4	2.1	2.1	2.2	1.3
기타	109	85	111	109	65
	3.1	2.4	2.9	2.5	1.4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203건(5.7%)

2)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190건(5.4%)

3)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6년)



[그림 9]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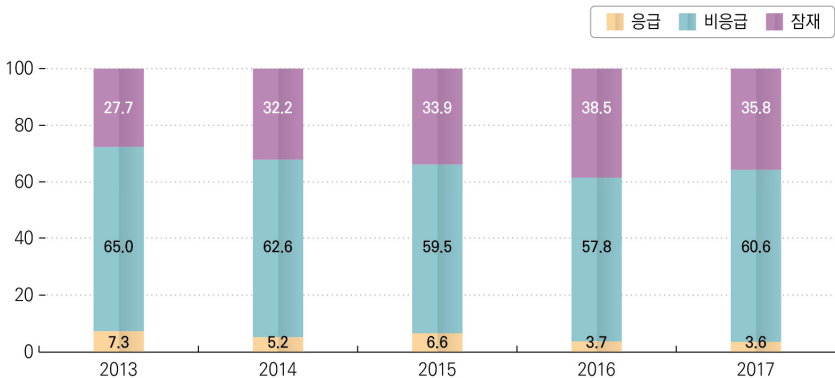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면 응급 사례의 경우 2013년 이후 약 36.0%(258건→165건) 감소하였음.
- 비응급 사례는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잠재 사례는 2013년까지 25% 내외의 비율을 보이다 2016년부터 35% 이상으로 증가함

[표 10]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응급	258	184	251	159	165
	7.3	5.2	6.6	3.7	3.6
비응급	2,288	2,211	2,271	2,472	2,803
	65.0	62.6	59.5	57.8	60.6
잠재	974	1,137	1,296	1,649	1,654
	27.7	32.2	33.9	38.5	35.8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그림 10]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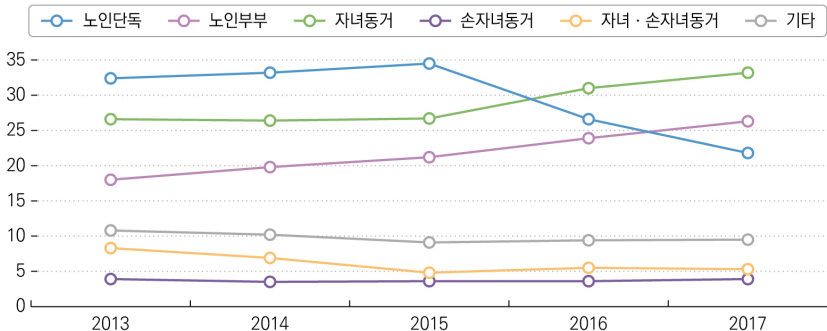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노인단독⁴⁾가구는 2013년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6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노인부부는 2013년 대비 91.5%(635건 → 1,216건) 증가함
-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15.7%(1,328건 → 1,536건) 증가함

[표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노인단독	1,141	1,172	1,318	1,140	1,007
	32.4	33.2	34.5	26.6	21.8
노인부부	635	701	808	1,023	1,216
	18.0	19.8	21.2	23.9	26.3
자녀동거	937	932	1,021	1,328	1,536
	26.6	26.4	26.7	31.0	33.2
손자녀동거	137	123	139	154	178
	3.9	3.5	3.6	3.6	3.9
자녀·손자녀동거	291	244	185	234	245
	8.3	6.9	4.8	5.5	5.3
기타	379	360	347	401	440
	10.8	10.2	9.1	9.4	9.5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그림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4) '노인단독 가구'라 함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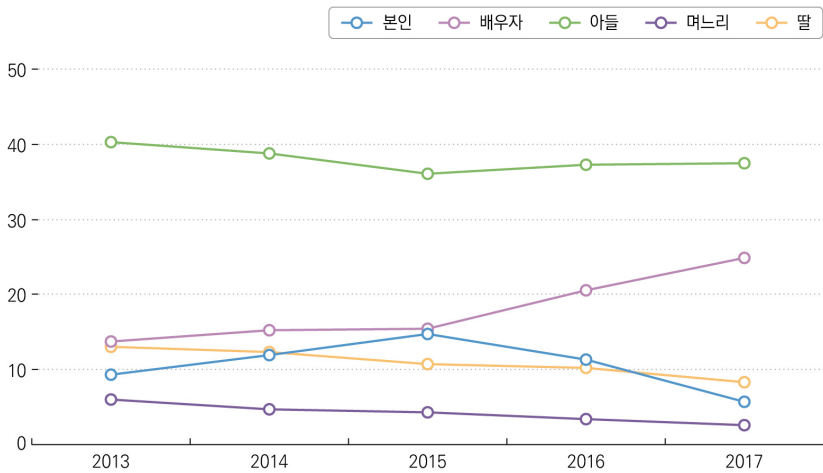
-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 학대행위자 유형(‘17년) : 아들(37.5%), 배우자(24.8%), 기관(13.8%), 딸(8.3%) 순
 - ** 배우자 비율 추이 : 13.7%(‘13년) → 15.4%(‘15년) → 24.8%(‘17년)
-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학대행위자가 “본인”이 되는 비율이 2013년 9.3%(375건)에서 2017년 5.7%(290건)으로 22.7% 대폭 감소함

[표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본인	375	463	622	522	290
	9.3	11.9	14.7	11.3	5.7
배우자	551	588	652	952	1,263
	13.7	15.2	15.4	20.5	24.8
아들	1,619	1,504	1,523	1,729	1,913
	40.3	38.8	36.1	37.3	37.5
며느리	240	184	183	157	131
	6.0	4.7	4.3	3.4	2.6
딸	519	476	451	475	424
	13.0	12.3	10.7	10.2	8.3
사위	28	18	21	23	27
	0.7	0.5	0.5	0.5	0.5
손자녀	81	56	64	103	124
	2.0	1.4	1.5	2.2	2.4
친척	54	56	46	63	49
	1.3	1.4	1.1	1.4	1.0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타인	253	246	283	221	176
	6.3	6.3	6.7	4.8	3.5
기관	293	285	379	392	704
	7.3	7.4	9.0	8.5	13.8
계	4,013	3,876	4,224	4,637	5,101
	100	100	100	100	100



[그림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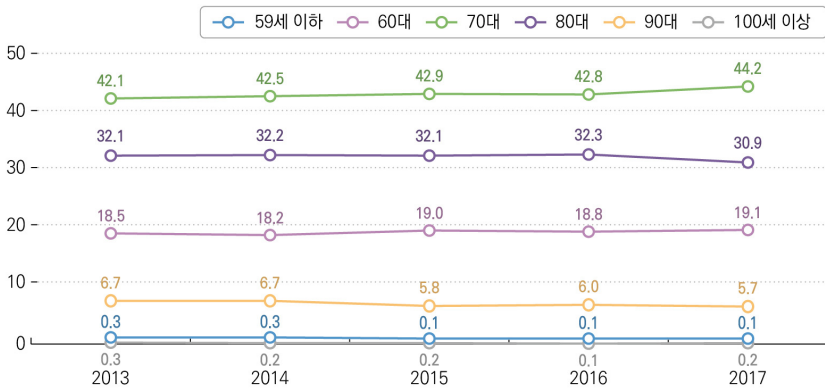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2013~2017년) 70대 학대피해노인 비율은 소폭 증가(70대 42.1% → 44.2%)하고 있으며, 80대(32.1% → 30.9%), 90대 이상(9.7% → 5.7%) 연령대에서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9세 이하	12	9	3	5	4
	0.3	0.3	0.1	0.1	0.1
60~64세	189	191	204	213	141
	5.4	5.4	5.3	5.0	3.1
65~69세	462	452	524	589	740
	13.1	12.8	13.7	13.8	16.0
70~74세	728	654	771	852	969
	20.7	18.5	20.2	19.9	21.0
75~79세	753	846	865	978	1,071
	21.4	24.0	22.7	22.9	23.2
80~84세	712	716	770	881	900
	20.2	20.3	20.2	20.6	19.5
85~89세	420	421	456	499	525
	11.9	11.9	11.9	11.7	11.4
90~94세	193	191	163	206	204
	5.5	5.4	4.3	4.8	4.4
95~99세	42	46	56	53	58
	1.2	1.3	1.5	1.2	1.3
100세 이상	9	6	6	4	10
	0.3	0.2	0.2	0.1	0.2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100	100	100	100	100



[그림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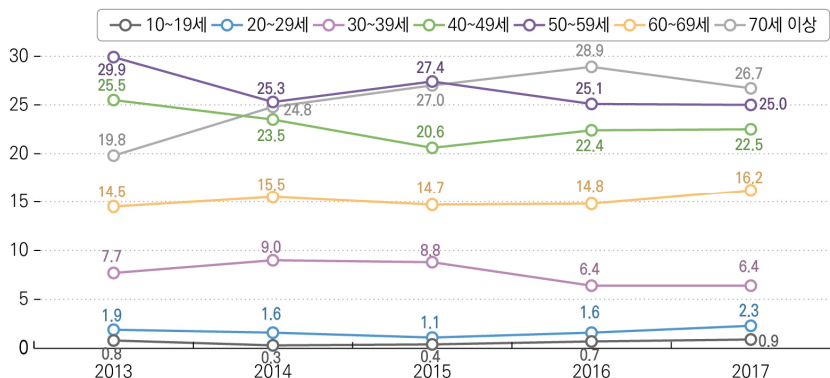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최근 5년간 40~50대 중년층의 학대행위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40~50대 학대행위자 추이 : 55.4%(‘13년) → 48.0%(‘15년) → 47.5%(‘17년)
- 2017년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1,363명(26.7%)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275명(25.0%), 40대가 1,150명(22.5%)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19세	31	12	18	33	46
	0.8	0.3	0.4	0.7	0.9
20~29세	75	63	46	76	115
	1.9	1.6	1.1	1.6	2.3
30~39세	310	347	372	296	325
	7.7	9.0	8.8	6.4	6.4
40~49세	1,022	911	870	1,040	1,150
	25.5	23.5	20.6	22.4	22.5
50~59세	1,201	981	1,156	1,166	1,275
	29.9	25.3	27.4	25.1	25.0
60~69세	580	602	622	687	827
	14.5	15.5	14.7	14.8	16.2
70세 이상	794	960	1,140	1,339	1,363
	19.8	24.8	27.0	28.9	26.7
계	4,013	3,876	4,224	4,637	5,101
	100	100	100	100	100



[그림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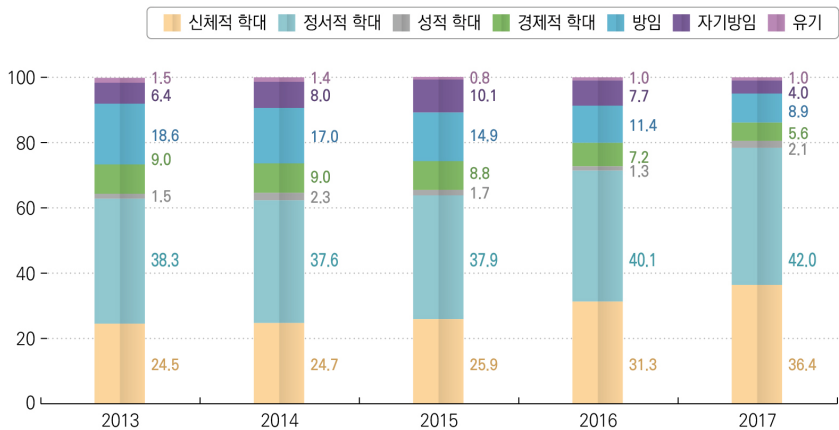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 - 신체적 - 방임” 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남
 - * 학대유형건수(17년) : 정서적 학대 3,064건(42.0%), 신체적 학대 2,651건 (36.4%), 방임 649건(8.9%), 경제적 학대 411건(5.6%), 자기방임 291건(4.0%), 성적 학대 150건(2.1%), 유기 71건(1.0%)의 순
-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형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
 - * 신체적 학대 증가율 : 24.3% (2,132건 → 2,651건)
 - ** 성적 학대 증가율 : 64.8% (91건 → 150건)
- 자기방임의 경우 전년대비 44.4% 대폭 감소(16년 523건 → 17년 291건)

[표 15]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체적 학대	1,430	1,426	1,591	2,132	2,651
	24.5	24.7	25.9	31.3	36.4
정서적 학대	2,235	2,169	2,330	2,730	3,064
	38.3	37.6	37.9	40.1	42.0
성적 학대	90	131	102	91	150
	1.5	2.3	1.7	1.3	2.1
경제적 학대	526	521	542	491	411
	9.0	9.0	8.8	7.2	5.6
방임	1,087	984	919	778	649
	18.6	17.0	14.9	11.4	8.9
자기방임	375	463	622	523	291
	6.4	8.0	10.1	7.7	4.0
유기	89	78	48	66	71
	1.5	1.4	0.8	1.0	1.0
계	5,832	5,772	6,154	6,811	7,287
	100	100	100	100	100



[그림 15]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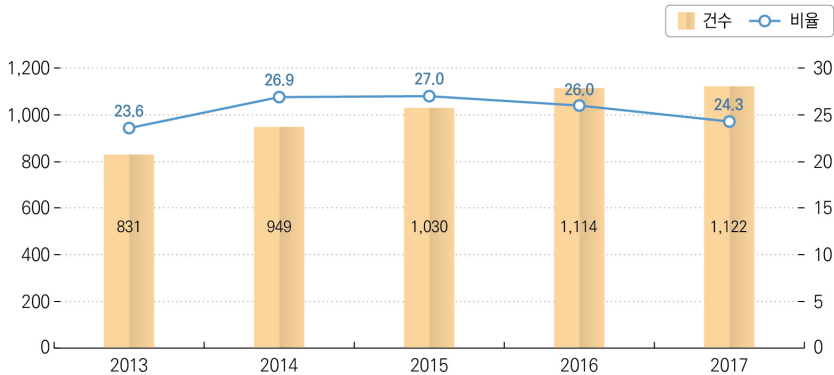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를 진단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2013년 831건에서 2017년 1,122건으로 약 35.0% 증가하였음

[표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의심 및 진단사례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학대사례		3,520	3,532	3,818	4,280	4,622
치매정도	치매의심	459	488	561	593	488
	치매진단	372	461	469	521	634
	계	831	949	1,030	1,114	1,122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23.6	26.9	27.0	26.0	24.3



[그림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의심 및 치매 진단사례 현황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인 쇄 일 : 2018년 6월

발 행 일 : 2018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 집 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이기민

편집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김선태, 김상은, 김재인, 양창준, 이해숙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